

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3. 9.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9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2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7. 3. 14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김광우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예산회계법」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조항이 변경 및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.
(1) 회계관계공무원 관련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로 함 (안 제1조).
- 회계관계공무원 중 제2조제3호 예산회계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, 분임자,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삭제 함 (별표 1의 비교 제1호)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